

의안번호	제540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10월 17일 (제324회)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노광기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9월 16일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노광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3년 9월 16일
발의자 : 노광기, 장선배, 김양희
박종성, 손문규, 최미애
최병윤 의원

1. 개정이유

-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를 강화하고,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보완(안 제4조)
 -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용자 규정 신설
 -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 적정성 검토 및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 규정 신설
-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 수반(비용추계서) : 해당 없음
- 집행기관 협의 여부 : 여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용도) 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
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
3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
4. 통합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
5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의 예치
6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

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,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용도)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</p> <p>3.~6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용도) 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</p> <p>3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,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